



기/계/분/야

1. 재해발생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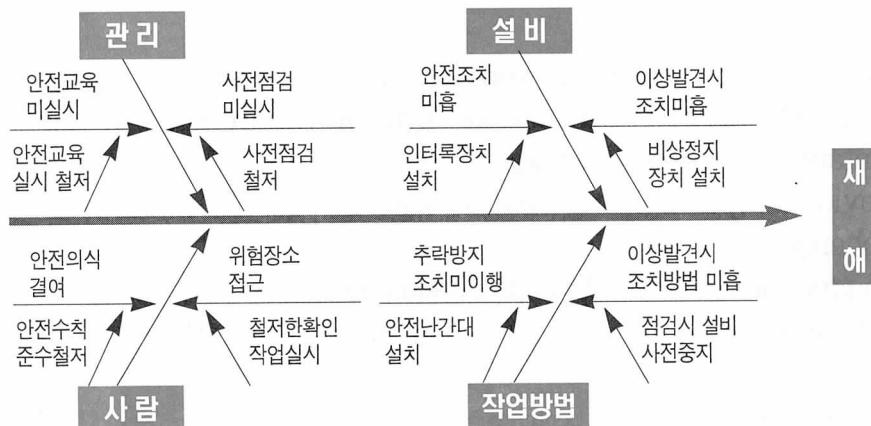
2000년 6월 20시20분경 ○○사에서 합판제조공정 중 로타리공정에서 발생되는 파목을 분쇄하는 CHIPPING M/C 작업자가 호퍼내로 추락하여 분쇄 날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요인

- 가. 측면에 안전율 미설치
- 나. 호퍼 전면 안전난간대 미설치
- 다. 비상정지 스위치의 미설치

3. 특성요인도



4. 동종재해예방대책

가. CHIPPING M/C 주변의 안전율 보완

전면에만 안전율 및 안전문이 설치되어 있어 작업자 임의로 출입이 가능하므로 측면과 후면에도 안전율을 설치하여야 함.

출입문에는 Inter Lock장치를 설치하여 운전중에 출입 할 경우 사용중인 기기가 정지 되도록 하여야 함.

나. 호퍼 전면에 안전난간대 보완

안전난간대를 900mm 이상 높이로 설치하고 450mm정도의 위치에 충분한 강도의 중간대를 설치하여 추락을 방지하여야 함

다. 안전 컨베이어 설치

파목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 컨베이어를 파목에 의한 끼임을 방지하여야 함.

라. 비상정지 장치의 설치

호퍼의 전면에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여 작업자가 이상발견시 신속하게 설비의 가동을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함

5. 법위반 사항

◎ 사업주 관련사항

법 제23조 : 안전상의 조치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이하의 벌금

법 제31조 제1항 : 근로자에게 안전교육 미실시시 5백만원이하의 벌금

◎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관련사항

법 제31조 제1항 : 상기와 동일



전/기/분/야

1. 재해발생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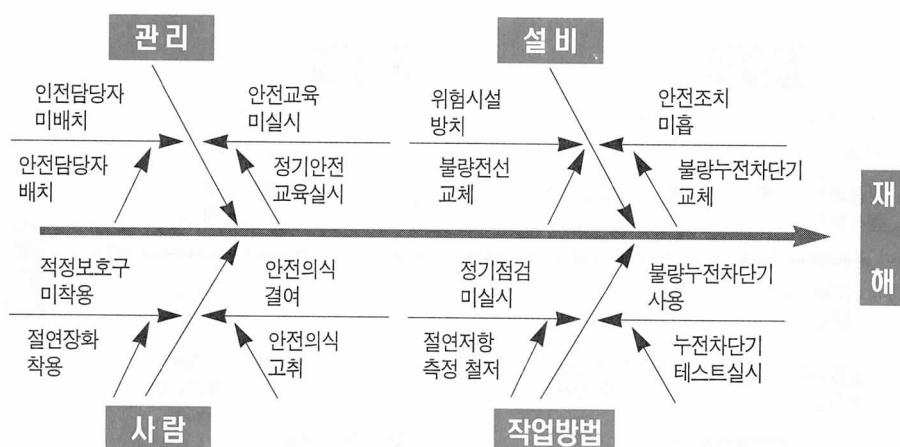
2000년 7월 00고속도로현장에서 강관파이프로 만든 이동식 작업대차를 이용하여 방수셔트 조인트 접착작업을 하던 중 단관파이프를 잡고있던 작업자가 220V에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요인

- 가. 누전차단기 불량
- 나. 가설전선 절연상태 불량
- 다. 정기점검 미실시

3. 특성요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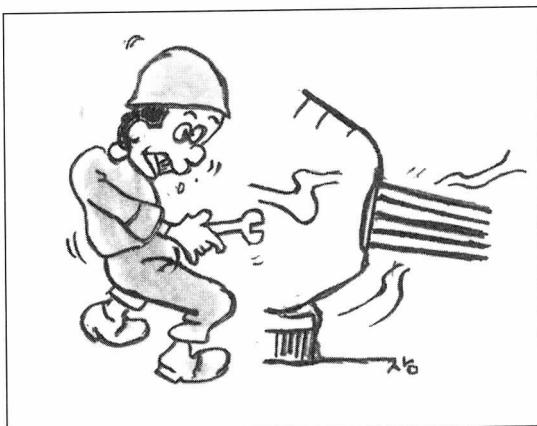




화/공/분/야

1. 재해발생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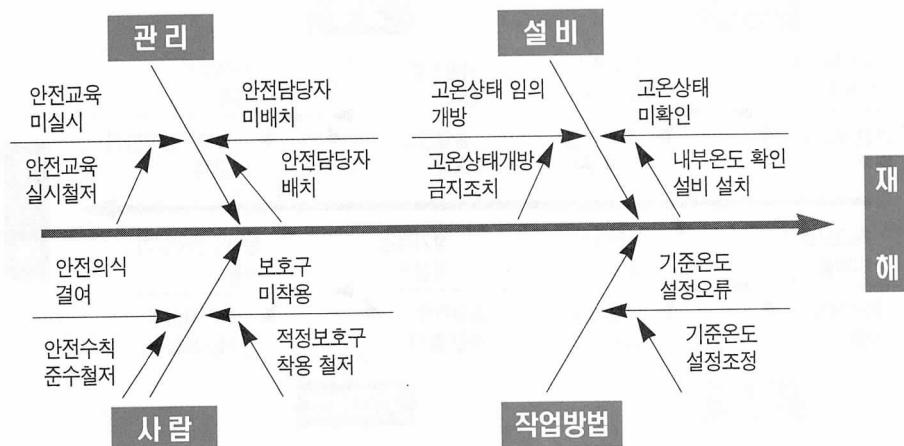
2000년 4월 20:00경 울산시 소재 ○○(주)공장에서 정상정지후 내부청소를 위한 작업 중 Spray Column의 34" ManHole을 개방하다 내부에 체류하던 약 72°C의 Styrene Monomer 증기 등에 접촉하여 근로자 5명이 화상을 입은 재해임.



2. 재해발생요인

- 가. 고온상태에서 ManHole 개방
- 나. 작업자 보호구 착용 미흡
- 다. 용기개방 온도기준설정 오류

3. 특성요인도



4. 동종재해예방대책

가. 고온상태에서 ManHole 개방 금지

Spray Column의 내부온도가 사고당시 72°C였으며, 고온증기가 분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상태(최고 30°C이하)에서 개방하여야 함.

나. 작업자의 보호구 착용 철저

해당 작업자는 고온증기의 분출로 발생될 수 있는 작업시 화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함.

다. 작업절차서상 기준온도 설정

작업의 특성에 따라 (산업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8조) 작업절차서상의 기준온도를 설정하여야 함.

*참조(접촉방지배관표면온도:Personal Protection)

- ASTM의 Eng Spec에 규정된온도:65°C

- 미국의Eng 및 석유화학업체의 Spec상 온도:60°C

- 국내 Plant 건설공사시의 온도 :60°C

5. 법위반 사항

◎ 사업주 관련사항

법 제23조 :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이하의 벌금

법 제31조 제1항 : 근로자에게 안전교육 미실시시 500만원이하 벌금

◎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관련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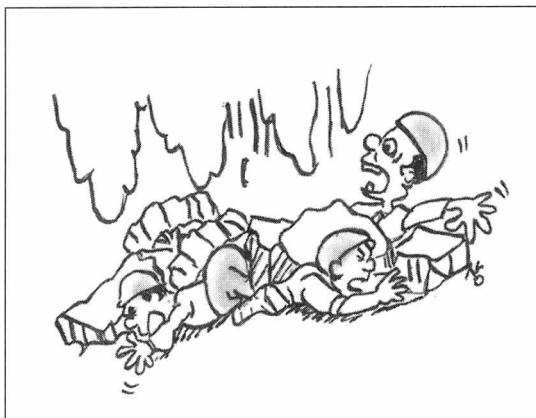
법 제31조 제1항 : 상기와 동일



건 / 설 / 분 / 야

1. 재해발생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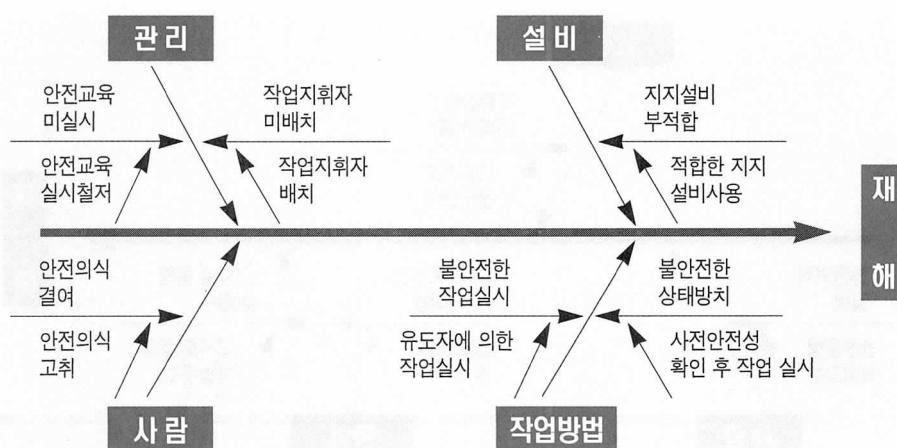
2000년 7월 서울시 소재 복개구조물 보수공사장에서 콘크리트 기둥 절단파쇄작업 중 Jack Support 해체 과정에서 교각이음 부위의 침하와 노후된 상부 구조물의 지지강도 부족으로 붕괴되어 3명이 매몰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요인

- 가. 작업방법불량
 - 나. 사전 안전성 검토 미실시
 - 다. 작업감독자 미배치

3 트선요이드



4. 동종재해예방대책

가. 작업방법 개선

-상부 슬라브에 당초 보수·보강전보다 추가 처짐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둥과 슬라브가 밀착 시공되는 구조의 공법을 선정하여 실시하여야 함.

- Jack 하부는 유하량에 의해 세균이 이루어지므로 Jack 고임지점에 침하방지구조물 선 시공후 작업하여야 함.

나. 보수·보강작업전 사전안전성 검토

콘크리트 강도 및 철근배근상태, 철근량, 슬라브의 두께, 기둥의 하부지지구조 생략 등 구조적인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복개구조물 상부의 도로 Ramp구조물에 대한 보수보강 천에 복개구조물에 대한 안전성검토를 하고 현장여건에 맞는 작업방법 선정이 요구됨.

5. 법위반 사항

◎ 사업주 관련사항

법 제23조 :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이하의 벌금

법 제31조 제1항 : 근로자에게 정기안전교육 미실시 시 500만원이하 벌금

◎ 악전관리자 관리감독자 관리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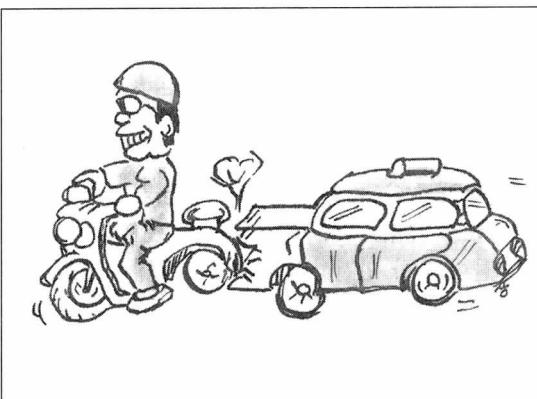
법 제31조 제1항 : 상기와 동일



교 / 통 / 분 / 약

1. 재해발생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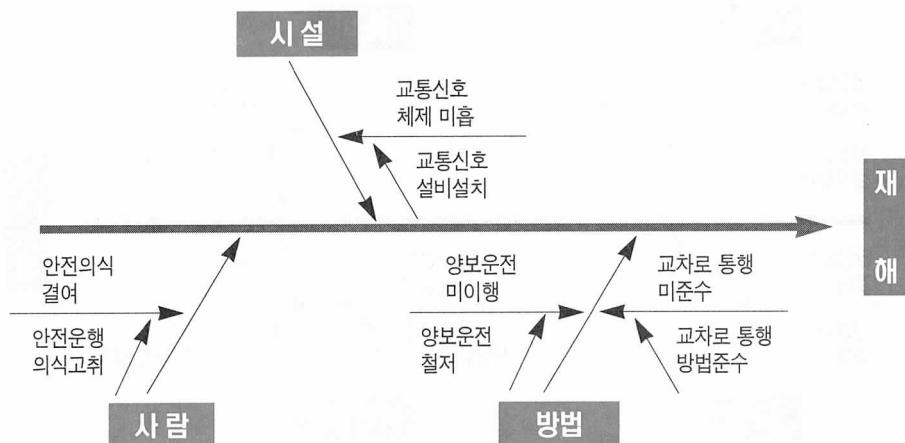
2000년 6월 전남 여수시내에서 편도 1차로에서 좌회전 중이고 오토바이는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직진하던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사고 차량의 운전석 중간부분과 오토바이 앞바퀴 정면과 돌격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요인

- 가. 교차로 일시정지 불이행
- 나. 안전운전 불이행
- 다. 양보운전 미이행

3. 특성요인도



4. 동종재해예방대책

가. 교차로 일시정지 준수

교통 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진입하려고 하는 모든 차량은 정지선에서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 앞뒤, 좌우 교통상황을 파악한 후, 교통통행우선순위에 따라 운행하여야 함.

나. 교차로 안전운전 이행

- 선 진입차에게 우선권을 주어 통행케 한다
- 동시진입의 경우에는 긴급자동차, 일반자동차, 오토바이, 차마 등의 순으로 통행한다
- 폭이 넓은 도로의 차가 좁은 도로의 차가 우선한다.
- 도로폭이 같으면 우측도로의 차에게 우선권을 준다
- 직진하려는 차가 좌우회전하는 차보다 우선한다.

5. 법위반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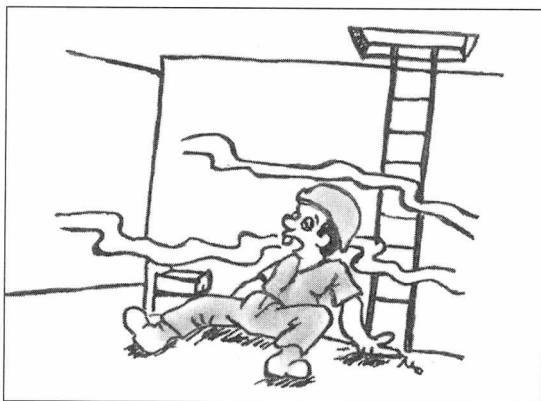
- ◎ 도로교통법 제44조 안전운전의무 불이행
- ◎ 도로교통법 제22조 교차로통행 방법 위반
- ◎ 도로교통법 제14조 통행우선순위 위반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적용 치사한 경우



기/타/분/야

1. 재해발생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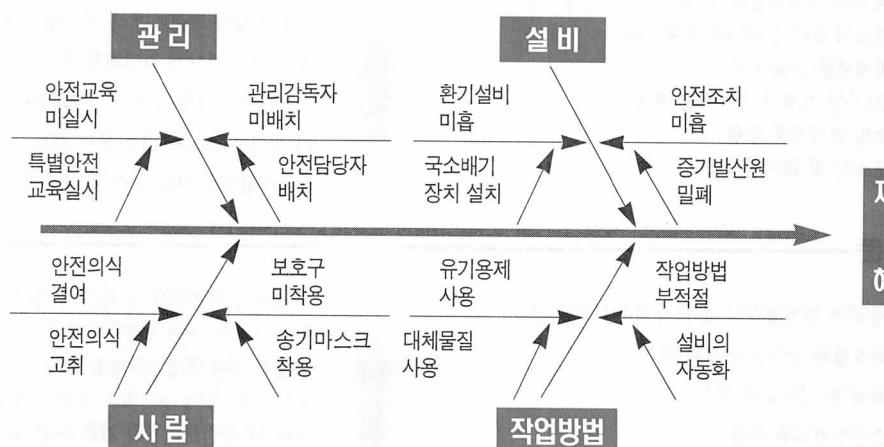
경기도에 소재한 인조견 제조업체인 ○○사업장은 '80년대 초부터 인조견 제조공정중에 발생하는 이황화탄소(CS_2) 중독으로 사망자 8명을 포함하여 600명 이상의 직업병자가 발생하였음.



2. 재해발생요인

- 가. 불량한 환경에서의 작업
 - 나. 작업환경측정 및 근로자 건강진단 미실시
 - 다. 특수건강진단기관의 후속조치 의견무시
 - 라. CS₂중독정보 및 사례수집 등 연구활동미흡

3. 특성요인도



4. 동종재해예방대책

가. 유기용제 대체사용

유해성이 적은 물질로 대체하여 사용하고 가능하면 시설을 자동화하여 해당작업자의 폭로기회를 최소화으로 줄여야 학

나.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및 관리

유기용제의 증기 발산원을 밀폐하거나 설비의 밀폐가 어려울 경우 작업 특성에 맞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 다. 작업계획수립 및 표준작업관리 지침준수.
 - 라. MSDS작성비치 및 교육실시 철저
 - 마. 보호구 착용 및 관리
 - 바. 관리감독자의 직무 철저

5. 법위반 사항

◎ 사업주 관리사항

법 제23조 : 보건상의 조치위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이하의 벌금

법 제31조 제3항 : 근로자에게 특별안전교육 미실시 시 500만원이하 벌금

◎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관련사항

법 제31조 제3항 : 상기와 동일